물질안전보건자료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N-ethylformamide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중요 유기화학물질 원료 및 중간체; 유기용매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권고용도 외에 사용하지 마시오.

다. 제조자

회사명: Suqian Xinya Technology Co.,Ltd

주소: No.28 Nanhua Road, North Part, Suqian Economic Development Zone, Jiangsu

China 223809

긴급전화번호: +86-532-83889090 전화번호: +86-527-84836100/6013

Fax: +86-527-84836205

라. 국내 공급자

회사명:㈜삼일케미칼

주소: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 길 21 (여의도동,동성빌딩 6 층)

긴급전화번호: 02-786-3921

Fax: 02-786-3923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6-19 호에 따라 분류되지 않음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 해당없음 신호어 : 해당없음

유해·위험문구: 해당없음

예방조치문구

예방: 해당없음 대응: 해당없음 저장: 해당없음 폐기: 해당없음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이명(관용명)	CAS 번호	EC 번호	함유량(%)
N-에틸폼아마이드	N-formyldthylamine	627-45-2	211-001-2	99.7
(N-ethylformamide)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예방 차원에서 물로 눈을 헹구어내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비누와 다량의 물로 씻어내시오.

다. 흡입했을 때

- 들이마신 경우 사람을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라. 먹었을 때

-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먹이지 마시오.
- 물로 입을 헹구시오.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자료없음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물 분무, 내알코올성 포말, 분말소화약제 또는 이산화탄소
- 부적절한 소화제: 자료없음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탄소산화물, 질소산화물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소화 작업 시 필요할 경우 자가호흡장비를 착용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증기, 미스트 또는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하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적절한 밀폐 용기에 보관하여 폐기하시오.
- 폐기와 관련하여 13 항을 참고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화재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를 취하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

-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시오.
- 용기를 밀폐하여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 개봉한 용기는 조심스럽게 재밀봉하고 기울지 않게 하여 새는 것을 방지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 해당없음 ACGIH 규정 : 해당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일반적인 산업위생 절차를 따르시오.

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 호흡기 보호구 착용이 요구되지 않음
- 노출방지용으로 OV/AG (US)형 또는 ABEK(EU EN 14387)형 타입의 카트리지를 사용하시 오.
- 방독마스크의 경우에는 NIOSH (US) 또는 CEN (EU) 와 같이 적절한 국가 표준에 의해 인 증 및 테스트를 받은 호흡보호구와 구성품을 사용하시오.

눈 보호

- NIOSH (US) 또는 EN166(EU)와 같이 적절한 국가 표준에 의해 인증 및 테스트를 받은 눈보호용 도구를 사용하시오.

손 보호

-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하시오.
- 장갑은 사용하기 전에 검사하시오.
- 제품이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적당한 장갑 제거 기술(장갑 외부 표면을 만지지 않는)을 사용하시오.
- 사용된 후에 오염된 장갑은 적용 법률 및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에 따라 폐기하시오.
- 손을 세척하고 건조하시오.
- EU 지침 98/686/EEC 와 여기서 파생된 EN374 표준의 규격을 충족하는 보호장갑을 선택하시오.

신체 보호

- 불침투성 의복을 착용하시오.

- 보호장비 종류는 특정 작업장에서의 위험물질의 농도와 양에 따라 선택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성상: 액체

색상: 무색 혹은 연한 노란색

나. 냄새 : 자료없음

다. 냄새역치 :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자료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202 - 204 ℃

사. 인화점 : 113 [℃] (밀폐식)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카. 증기압 : 자료없음

타. 용해도 : 물, 메탄올, 에탄올에 용해됨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하. 비중/밀도 : 0.95 g/ml (20 °C)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 자료없음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 자료없음

머. 분자량 :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자료없음

나. 피해야 할 조건: 자료없음

다. 피해야 할 물질:

- 강산화제, 산, 염기, 염산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자료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호흡기: 흡입하면 유해할 수 있음. 기도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경구: 삼키면 유해할 수 있음

피부: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유해할 수 있음.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눈: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자료없음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자료없음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자료없음 **발암성**: 분류되지 않음

IARC 조사 결과, 이 제품에 0.1% 이상 존재하는 어떤 성분도 유력하거나, 가능성이 있거나,

확인된 인체 발암 물질로 확인되지 않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자료없음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 회 노출) :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자료없음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 **급성 수생 독성 :** 자료없음 - **만성 수생 독성 :** 자료없음

어류: 자료없음 **갑각류**: 자료없음 **조류:** 자료없음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 자료없음생분해성 : 자료없음라. 토양이동성 : 자료없음마. 기타 유해 영향 : 자료없음

바. 오존층 유해성: 해당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에 명시되지 않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잔여물과 비재생 용액은 허가를 받은 정식 폐기업체에 제공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오염된 포장은 미사용 제품처럼 폐기하십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해당없음

나. 적정선적명: 해당없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없음

라. 용기등급: 해당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해당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 해당없음 유출시 비상조치 : 해당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규제되지 않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규제되지 않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4 류 제 3 석유류 (수용성), 4000L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규제되지 않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규제되지 않음

국외규제

로테르담협약물질: 규제되지 않음 스톡홀름협약물질: 규제되지 않음 몬트리올의정서물질: 규제되지 않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Suqian Xinya Technology Co., Ltd.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TLVs and BEIs.

National Toxicology Program; http://ntp.niehs.nih.gov/results/dbsearch/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s; http://monographs.iarc.fr

ECHA; https://echa.europa.eu/information-on-chemicals/cl-inventory-database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net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ncis/

국민안전처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http://hazmat.mpss.kfi.or.kr/material.do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6-41 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나. 최초작성일자 : 2014.12.18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1

최종 개정일자: 2017.04.14

라. 기타

- 위 정보는 정확하며, 알고 있는 최상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정보와 관련하여 상업성에 대한 또는 기타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으며, 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취급자는 그들의 특정한 목적에 대한 정보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 3 자의 클레임, 손실, 손해 또는 이익의 손실이나 어떠한 특수한 손해, 간접적 손해, 우발적 손해, 중대한 손해 또는 가혹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비록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고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수정함.
- 이 MSDS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 조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